

방문요양 /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(2025.01.01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940<2,541>	150분 이상	49,160<7,374>
60분 이상	24,580<3,687>	180분 이상	55,350<8,303>
90분 이상	33,120<4,968>	210분 이상	61,670<9,251>
120분 이상	42,160<6,324>	240분 이상	68,030<10,205>

○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(60분 이상)	48,690<7,304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(40분 이상 60분 미만)	38,952<5,843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) 목욕 (60분 이상)	86,480<12,972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) 목욕(40분이상 60분미만)	69,184<10,378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) 목욕 (60분 이상)	77,970<11,696>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) 목욕(40분 이상 60분 미만)	62,376<9,356>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9% 또는 6%